

중간·기말고사 시험감독에 관한 규정

제정 2007.04.05.

시간별 고사 진행사항

(1) 감독자 입실

- 1) 시험시간 15분 전에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들(감독자 준비물)을 지정된 장소에서 준비하여 조교실에서 신분확인을 받은 후, '감독자 서약서'를 작성한다.
- 2) 감독자는 해당 과목 교수님께 문제지 수령여부를 확인하고,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해당 고사장에 입실하여 자리를 정돈한다. 자리를 정돈할 때에는 1줄 간격으로 띄어서 앉도록 한다.
- 3) 시험과목과 시험시간을 칠판에 명기하고, 수험자로 하여금 미리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(2) 소지품 처리

- 1) 필기구와 신분증 이외에 시험장에 가지고 온 모든 소지품은 가방에 넣어 강의실 앞, 뒤 또는 자리 밑에 두도록 한다. 고사장이 주산홀과 소강당인 경우에는 반드시 소지품을 앞으로 내어 놓게 한다.
- 2) 휴대폰은 전원을 끄거나 배터리를 분리시켜 가방에 넣도록 한다. 휴대용 전자기계(PDA, MP3P, PMP 등)도 휴대폰과 동일하게 처리한다. 다만, 시각고지 기능만 있는 시계는 사용할 수 있다.

(3) 법전사용

- 1)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문제지에 기재되어 있는 법전사용여부를 확인한 후, 수험자의 법전을 무작위로 교환할 수 있게 한다. 단, 수험자가 적합한 법전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전 교환대상에서 제외한다.
- 2) 문제지에 기재되어 있는 법전 이외의 법전은 사용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.

(4) 수험자 신원확인

- 1)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.
- 2) 감독자는 신분확인과 동시에 감독자 확인서명을 하고 응시표를 회수하도록 한다.
- 3)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수험생의 답안지에는 '신분확인 필요'의 날인을 한다.
- 4) 신분확인이 필요한 자는 이름과 함께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, 사진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실하지 못한다.

(5) 시험시간 및 시각고지

- 1) 시험시작 후 30분 이내에는 고사장 입실이 가능하다. 시험시간에 늦은 수험생도 예외없이 종료시간 내에 답안작성을 하여야 함을 고지한다.
- 2) 시험시간 종료 15분 전, 종료 5분 전에 각각 시간을 고지한다.

(6) 퇴실 및 시험종료

- 1) 시험시작 후 30분이 경과한 후에 답안지를 제출하고 퇴실할 수 있다.
- 2) 원칙적으로는 고사시간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나, 불가피한 경우 마찬가지로 30분이 경과한 때부터 이용할 수 있게 하며, 이 때 반드시 감독자 1인이 동행한다.
- 3) 시험시간 종료와 함께 답안지 작성을 멈추게 하고, 답안지를 회수한다. 이 때 반드시 여분의 답안지와 응시표도 함께 회수하여야 한다.
- 4) 답안지를 정시에 내지 않은 학생은 답안지 성명란 위에 '시간 초과'의 날인을 한다.
- 5) 답안지를 회수한 후 교육자료제작실에서 답안지와 응시표, 응시자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철하여 해당과목 교수님께 제출한다.

감독자 유의사항 및 준비물

(1) 감독자 유의사항

- 1) 개인물품을 소지하지 못한다. 감독자는 시험감독 이외에 책을 보거나 응시자 또는 감독자 간에 잡담, 휴대폰 통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- 2) 시험감독상 필요한 사정이 아니면 고사실을 이탈할 수 없다.

- 3) 대리 감독은 할 수 없다. 불가피하게 감독자를 변경해야 할 경우 미리 원감독자가 해당 과목 교수님께 확인을 받고, 이를 조교실에 알린 후에 할 수 있다. 대리감독을 한 경우에는 조교실에서 해당자를 사후 교무부학장님께 보고한다.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.
- 4) 모든 시험감독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감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감독을 할 수 없다.

(2) 감독자 준비물

- 1) 답안지 및 응시표 : 응시자 인원수에 맞추어 넉넉히 준비한다.
 - ☞ 교육자료제작실
- 2) 스테이플러, 사인펜, 도장, 스탬프, 고무인(부정행위, 신분대조필요, 시간초과자)
 - ☞ 교육자료제작실 또는 조교실
- 3) 감독을 위해서 가져간 물품은 쓰고 난 후 반납한다.

부정행위자 조치

- (1) 이 규정에서 부정행위자란 ‘부정행위자 처리규정’에 명시되어 있는 부정행위자를 말한다.
- (2)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하여는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고지하고, 답안지에 ‘부정행위’ 날인을 하며, 시험이 종료한 후 감독자는 해당 학생과 함께 부학장실(15동 4층)로 동행하여 사실을 보고한다.

* 교육자료제작실: 17동 207호, 교수휴게실: 17동 206호, 조교실: 17동 210호(880-7565)

부칙 <2007.4.5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